

배 당 요 구 신 청

사건번호

채 권 자

채 무 자

배당요구채권자

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

배당요구채권

1. 금 원정

○ ○ 법원 가단(합) ○ ○호 ○ ○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

기한 채권 금 원의 변제금

1. 위 원금에 대한 년 ○ 월 ○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○ 푼의 지연손해금

신 청 원 인

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귀원 타경 ○ ○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

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전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

로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배당요구채권자 (인)

연락처(☎)

지방법원

귀중

☞유의사항

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,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으며,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